

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30.(수)
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5. 27. 윤정자 의원 외 11명 발의 (의안번호 355호)

나. 회부일자: 2021. 5. 2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1. 6. 10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윤정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(안 제4조~제5조)
-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- 감염병 표본감시, 역학조사, 필수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0조)
-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4조)
- 강제처분·입원통지 및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7조)
-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
-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~20조)
- 소독의무 및 방역소독 실시권고(안 제21조~제22조)
- 예방위원 및 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~제24조)
- 방역관, 역학조사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~제27조)
- 교육 및 홍보,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~제29조)
- 정보제공 및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~제3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동성)

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감염병예방법”이라 함)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,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¹⁾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바목의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,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조²⁾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사료됨.

-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3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역학조사, 소독의무 사항, 예방접종, 자원봉사 활동 사항,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에서 감염병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, 차별금지 및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「감염병예방법」에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감염병예방법」에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고,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,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시의적절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